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11.18.

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12.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만호】

가. 제안이유

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구민상의 시상 7개 부문 분류된 내용을 삭제하고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규정(조례 제9조제3항)에 따라 구민상의 시상 부문은 규칙에 의해 명칭 등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9조제2항)
- 일부 표창장 서식 변경(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)
- 기타 표현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
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
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(안 제9조제2항)구민상의 시상 7개 부문으로 분류된 내용을 삭제하고
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규정(조례 제9
조제3항)에 따라 구민상의 시상 부문은 규칙에 의해 명칭 등 변경이 가능
하도록 개정하고, (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)일부 표창장 서식
변경 및 기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본 개정안은 구민상의 시상 부문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
칙」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한자어 표현 및 마포구 표창 서식 등에
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와 공익을 저해하는 바가 없
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